

2026년도 상반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신규기업 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,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,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. 3. 9.

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장

■ 모집개요

1. 공고기간 : 2026. 3. 9.(월) ~ 4. 2.(목)
2. 접수기간 : 2026. 3. 30.(월) ~ 4. 2.(목) 16:00
3. 센터위치 : **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**
4. 계약기간 : 2026. 4. 15. ~ 2027. 4. 14.
5. 모집규모 : 4개사
 - 계약기간 : 1년 (평가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)
 -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 포기 및 퇴소자 발생 시, 차점자 추가 선발
 - ※ 최소기준 (평균 60점이상) 불충족 시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6. 지원자격
 - 지원자격
 - 예비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,
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
 - 기창업자 :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,
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기창업자
 - 지원제한
 -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(1인창조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)
 - ※ 창업예정자는 최종 선정 후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창업 시 선정 취소됨
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에 해당하는 자
-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

7. 의무사항(불이행시 계약 취소)

-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
-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자료 제출

8. 주요 지원사항

- 공용 및 지정 사무공간 제공, 공용 사무기기 지원
- 전문가 자문 및 창업교육, 사업화지원 등 경영지원
- 기타 센터 편의시설(상품촬영실, 스튜디오, 카페 등) 이용

9. 제출서류 (*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)

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. (필수서류, 지정서식)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. (필수서류, 지정서식)
- 증명사진 첨부된 이력서 1부. (필수서류, 자유서식)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. (필수서류)
- 지방세, 국세 납입 증명서 각 1부. (필수서류)
-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 1부. (해당자)
-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. (해당자)
-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. (해당자)
- 주민등록등본 1부. (해당자)
-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. (해당자)
- 가점 및 기타 증빙 각 1부. (해당자)
 - ※ 가산점 항목 및 기타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점수에 인정되지 않음
 - ※ 기타증빙 : 지식재산권 및 각종 인증, 교육수료증 등

10. 심사방법 및 선정절차

- 심사방법 : 평가위원회에서 심사

- 1차 심사 : 1인 창조기업 자격요건(창업업종, 주소지 등) 서면심사 후
2차 심사여부 결정
- 2차 심사 : 사업능력, 입주적합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위한 대면 평가

평가항목		배점
창업자 역량	-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, 사업추진 의지	30
사업계획의 적정성	- 계획 및 목표의 구체성, 기술(제품)의 차별성	20
기술성	- 기술(제품)의 파급력, 기술구현의 현실성	20
시장성	-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, 시장진출의 가능성	20
기타	- 신청 사유, 선정 후 활동계획	10
가점	-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(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- 「도전! K-스타트업 2025」 왕중왕전 진출 기업) 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- 재창업기업(폐업사실확인서 제출必, 성실경영평가 통과자(1점) 및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(3점))	최대3점 (각1점)

- ※ 2차 면접심사 불참 시 0점 처리
- ※ 심사위원 합산 평균 60점 이상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업체를 선발함
- ※ 2차 발표심사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

- 선정절차 : 신청서 제출 → 1차 심사 → 2차 심사 → 최종 선정
- 결과통보 : 심의 후 홈페이지(꿈마루) 게시 및 개별 통보
 - 1차 심사 합격자 발표 및 2차 심사 공지 : 꿈마루 홈페이지만 공지
 - 최종 합격 발표 : 꿈마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

11. 접수 및 신청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3. 30.(월) ~ 4. 2.(목) 16:00까지(기한 엄수)
- 접수방법 : 온라인 신청 (※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)
 - 홈페이지 접수 : ①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(<https://apply.jobaba.net/>)
② 경기여성창업플랫폼 '꿈마루' 접수 (<https://www.dreammaru.or.kr/www/index.do>)
- 유의사항
 - 온라인 접수시 입력정보 부정확, 신청서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,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 -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, 연락두절 등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

-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접수 진행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범죄 경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기업 선정 등 지원사항 일체를 취소함

12. 기타사항

- 모집관련 상세내용 www.dreammaru.or.kr 공지사항
- 문 의 처 : 031-270-9788 (1인창조기업지원센터 담당)

[참고 1] 1인창조기업 확인 및 제출서류 자가진단표

① 1인 창조기업 확인

<https://www.k-startup.go.kr/common/knProject/application/ac/coCheckPop.do>

② 제출서류 자가진단표

제출서류	해당자		
	예비창업자	기창업자 (개인)	기창업자 (법인)
신청서	○	○	○
사업계획서	○	○	○
개인정보 동의서	○	○	○
이력서(사진포함)	○	○	○
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	○	○	○
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	○	○	○
지방세, 국세 납입 증명서	○	○	○
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대표자의 상시 고용인력 있는 경우만 해당)	×	○	○
대표자 주민등록등본	○	×	×
사업자등록증	×	○	○
법인등기부등본	×	×	○
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	×	○	○
가점증빙 및 이외 증빙	선택 제출		

※ 가점 증빙 및 지식재산권, 인증, 매출 등 이외 증빙은 해당자 제출서류로 증빙 제출될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
※ 1인 창조기업 정회원 확인서

([k-startup](#)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신청시 승인 이후 본인 출력 가능)

※ 가점사항

-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(1점)
 -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
 - 「도전! K-스타트업 2025」 왕중왕전 진출 기업
-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(1점)
- 재기 1인 창조기업(폐업 사실 확인서 확인)
 -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(1점)
 -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(3점)

[참고 2] 지원대상이 되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

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

□ (정의)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(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* 관련법령 :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

○ (유예기간)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
* (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)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<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 >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광 업	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	05
	금속광업	06
	비금속광물 광업; 연료용 제외	07
	광업지원서비스업	08
제조업	담배제조업	12
	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19
	1차 금속 제조업	24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35
	수도사업	36
하수.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	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	37
	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	38
	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건설업	종합건설업	41
	전문직별 공사업	42

구 분	해당 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도매 및 소매업	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	45
	도매 및 상품중개업	46
	소매업;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	47
운수업	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	49
	수상 운송업	50
	항공 운송업	51
	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	52
숙박 및 음식점업	숙박업	55
	음식점 및 주점업	56
금융 및 보험업	금융업	64
	보험 및 연금업	65
	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	66
부동산업 및 임대업	부동산업	68
	임대업; 부동산 제외	69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보건업	86
	사회복지 서비스업	87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	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비고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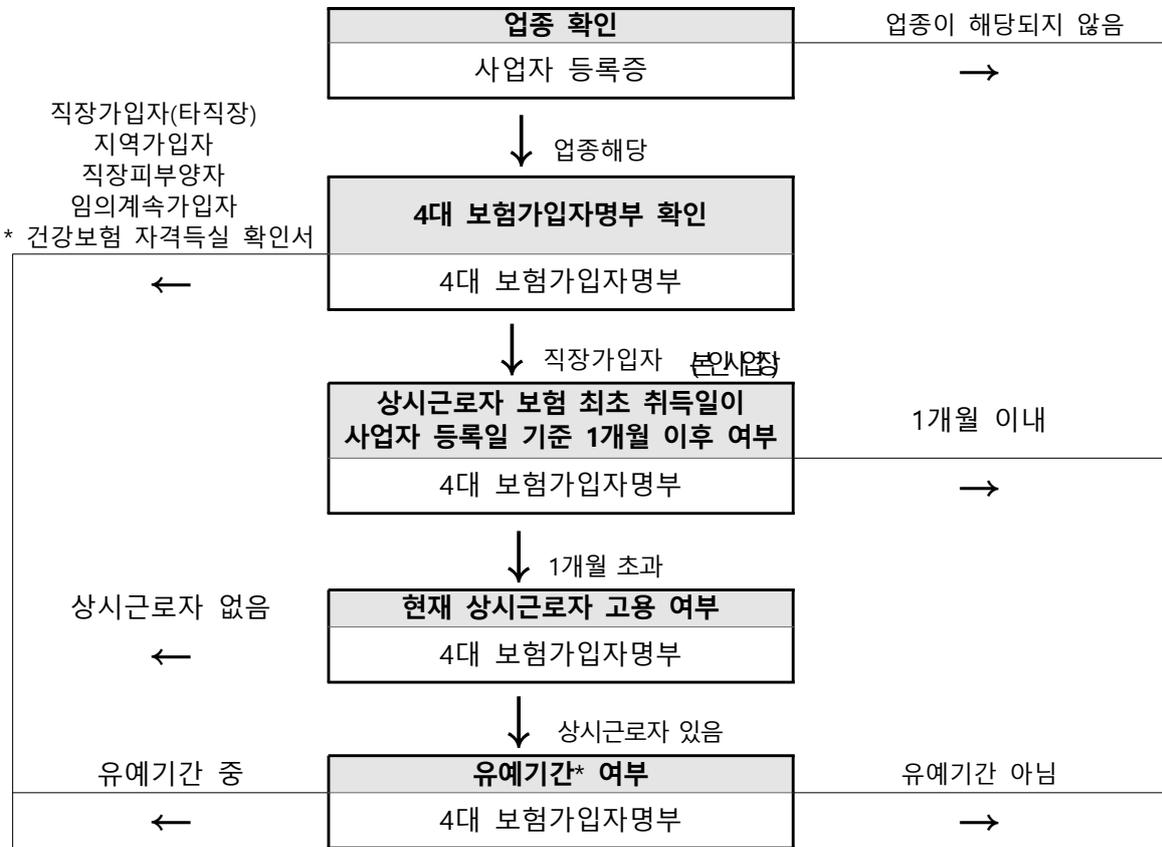
※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(1자리 코드), 중분류(2자리 코드), 소분류(3자리 코드), 세분류(4자리 코드), 세세분류(5자리 코드)로 구성되며,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"05(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)"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

[참고 3]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

- ◆ **업종 확인** :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,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
 - *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
- ◆ **상시근로자 확인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,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
 - * 직장가입자(타직장), 지역가입자(세대주, 세대원), 직장피부양자, 임의계속가입자 등
- ◆ **유예기간** :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
 - *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

<준비서류> 사업자등록증 사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4대보험가입자명부



※ 유예기간 판단 참고

1. **유예기간** : 상시근로자의 보험 최초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 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임
2. **유예기간 종료 후** : 상시근로자가 없었던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며, 이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했다면, 상시근로자의 보험 취득시점부터 3년 후 연말까지 유예기간에 해당
(예시) '17.5.1일 창업, '17.7.1일 상시근로자 보험 최초 취득
→ 유예기간은 '17.7.1~'20.12.31까지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 적용. 다만, '18.3.1~'18.3.31까지 상시근로자가 없고, '18.4.1일부로 다시 채용을 했다면, 재유예기간은 '18.4.1~'21.12.31까지임

지원대상

지원대상 아님